

게이트 스티커 및 ES벽면 포스터 광고 계약조건 및 광고시설물 세부내역

제1조(목적)

부산-김해경전철주식회사(이하 “발주자” 라 한다)와 “계약상대자” 는 부산김해경전철 게이트 스티커 및 ES벽면 포스터 광고 대행사업에 관하여 본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.

제2조(계약문서)

- ① 계약서는 표지, 계약조건 및 광고시설물 세부내역, 기타 붙임서류로 구성한다.
- ② “발주자” 와 “계약상대자”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본 계약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광고대행의 범위)

- ① 광고대행 대상 : 광고시설물 세부내역 참조
- ② 게이트 광고물의 제작,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
- ③ 기타 본 계약조건에 열거한 사항

제4조(계약이행 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 는 “발주자”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현금납부 시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“발주자” 에게 귀속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 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경우 계약이행 보증금은 전액 “발주자” 에게 귀속된다.

제5조(지급이행 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 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 계약해지시 미납 광고료 등 지급이행 보증과 광고물(시설물 포함)등의 철거 등 이행보증을 위해 “발주자”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의

지급이행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현금납부 시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“발주자”에게 귀속된다.

- ②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“발주자”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채권을 지급이행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
 1. 광고연체료
 2. 광고료
 3. 기타 미납비용, 부당이득금 등 채무 및 대집행비용 등
- ③ 전항의 경우 지급이행 보증금으로 각 채권에 충당한 결과 지급이행 보증금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“발주자”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고, 채권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이를 별도로 “발주자”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광고료의 납부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광고 계침실적에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본 계약월수로 분할한 해당 월 광고료(정액광고료)를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단, 준비기간 중 또는 월의 중간에 광고사업을 시작할 때의 광고료는 일할 계산하여 당월에 납부하거나 익월 광고료에 포함하여 납부할 수 있다.
- ② 광고료의 납기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을 납부일로 하며, 토요일일 경우 은행의 다음 영업일을 납기일로 한다.

제7조(광고연체료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가 광고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때에는 납부일의 익일 부터 기산하여 연18%를 적용한 광고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거 징수하는 광고연체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.
(체납월광고료 × 연체일수 / 연중일수 × 연체금리)
- ③ 연체 후 납부한 광고료 등은 광고연체료, 광고료 등의 순으로 충당한다.

제8조(광고료의 감면)

-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또는 “발주자”의 사정으로 광고 표출이 불가능하게 된 때
 2.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이미 부착된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광고대행지정을 취소하였을 때
 3. 부산김해경전철 시설물 보수 또는 “발주자”의 방침에 의하여 광고사업을 폐지하였을 때
 4. 기타 “발주자”가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의 사유로 기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할 때에는 광고부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.

제9조(광고료의 추가징수)

-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.
1.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광고물을 부착한 때
 2. “발주자”가 정한 위치 이외의 장소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“계약상대자”가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된 때
 3. 광고료 산정 시 명백한 하자나 착오가 발생한 때
 4. 기타 객관적이고 추가 징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
- ② 제1항의 사유로 추가 징수할 경우, 초과 계침 수량 또는 착오금액에 대하여는 “발주자”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적재산권에 관한 책임 등)

- ① 광고물의 제작·설치·운용 등에 관련된 지적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의장등록권 등 산업재산권, 영업비밀, 저작권 등)의 권리상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있으며, “계약상대자”의 책임으로 취득 또는 수수료 지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는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, 분쟁발생시 “계약상대자”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.

제11조(광고물등관리법규 등 준수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광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옥외광고물등관리법, 동법 시

행령 등 관계법령 및 기타 유관 단체에서 정한 광고기준과 “발주자”의 광고물등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(광고물 등의 유지관리)

- ① 계약기간 중 광고물 등(시설물광고물)은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담으로 유지, 관리한다.
 1. 광고물의 계·폐침
 2. 광고물 등의 철거 및 이설
 3. 기타 광고물 등의 유지·보수 관련사항
- ② 광고물 등의 멸실·훼손·퇴색 등으로 부산김해경전철 역사 환경을 저해하거나 광고계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- ③ “계약상대자”는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제11조에 위배되는 광고물이나 기 부착된 광고물에 대하여 민원 발생, 부산김해경전철의 방침에 따라 사회 정서상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, “발주자”는 “계약상대자”에게 광고물을 즉시 철거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자”의 지시에 조건없이 따라야 한다.
- ④ 광고물 등의 훼손·망실에 대하여 “발주자”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⑤ “계약상대자”는 “계약상대자” 또는 그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부산김해경전철 시설물과 이용시민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·형사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.
- ⑥ “계약상대자”는 광고물 등을 설치·부착·이전·철거 및 보수작업 등을 시행할 경우 “발주자”의 사전 승인을 받아 승객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승객이 한산한 시간 또는 부산김해경전철 영업종료 후 시행하여야 하며, 시설물의 훼손·망실 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제13조(계약수량 조정 및 디자인 개선 등)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계약된 계약금액, 광고물 등의 물량, 규격, 설치위치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.
 1. 게이트 증감 및 시설개선 또는 게이트 수량 파악 오류 등으로 기 계약된 물량 및 설치위치 조정이 필요할 때

2. 광고물의 규격 및 수량이 변경되었을 때
3. 주변여건 또는 환경의 변화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이 필요할 때
4. 정부 및 부산시, 김해시 방침 등에 따라 계약물량 조정, 사양 변경 등이 필요할 때
5. 기타 “발주자”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제1항에 의한 광고료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.

1. 계약물량만 조정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광고료만 조정 부과한다.
2. “계약상대자”의 비용부담으로 광고시설물의 광고면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디자인 개선 또는 변경 설치 할 경우에는 원가조사에 의하되 이전계약 원가조사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14조(광고물 재질)

- ① 게이트 스티커 광고물 재질은 광고물 게·폐침이 용이한 리무블 필름(시트지 등)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고물 철거 시 접착제 흔적이 없어야 한다.
- ② “발주자” 요청시, “계약상대자”는 광고물 재질을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검증한 방염소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방염필증을 부착하여야 하고 시공 후 10일 이내 “발주자”에게 방염소재 사용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광고물 등의 제거 의무)

-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“계약상대자”는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광고물을 제거 또는 시설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
 1.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된 때
 2. 게침 승인이 취소된 때
- ② “계약상대자”가 광고물 게침 승인조건을 위반하였거나, 승인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침 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광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.

- ③ “계약상대자”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“발주자”는 기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광고물 제거, 시설물 철거, 원상복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, 이를 초과하는 제비용(대집행비용 등)은 “계약상대자”가 부담한다. 이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자”에게 제거 또는 철거물의 대가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16조(계약의 해지)

- ① 계약기간 만료 이외에 “계약상대자”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“발주자”는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이행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1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“발주자”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
 2. 광고료를 90일 이상 연체하였을 때
 3. “발주자”의 사전 승인 없이 광고대행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
 4. 계약 위반으로 “발주자”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, 특별한 사유 없이 “계약상대자”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때
 5. “계약상대자”의 해산, 파산, 회사정리 등이 신청된 경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
- ②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기간 중 광고대행계약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해지 희망일 30일전 “발주자”에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재대행의 금지)

“계약상대자”는 광고대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“발주자”의 사전 서면동의(승인) 없이 제3자에게 재대행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.

제18조(대표자 변경 등)

본 계약체결 후 주소·상호·대표자 및 상업등기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“계약상대자”는 지체 없이 “발주자”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9조(관할법원)

- ① 본 계약의 수행 중 “발주자”와 “계약상대자”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위해 상호 성실히 노력한다.

② 본 계약상 분쟁의 합의 관할은 부산지방법원으로 한다.

제20조(조문해석)

본 계약서에서 약정한 조문 해석과 본 계약서에서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해석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쌍방 협의하여 해석하며,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
제21조(사고의 책임)

- ① 광고시설물 유지관리 및 광고물 부착, 철거 시 “발주자”의 지시위반 또는 “계약상대자”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“계약상대자”의 책임으로 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 또는 그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“발주자”의 시설물에 손실을 입혔을 때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제22조(신규매체 개발제안 등)

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조항에 명시된 광고종류 및 계약물량에 한하여 광고대행권이 있으며, “발주자”가 본 계약에 열거한 광고매체 이외 신규매체를 개발하여 타 사업자에게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도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 또는 광고료 감면등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23조(특약사항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광고사업을 위해 기존 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던 표기 및 안내문(사항) 이설 필요시, “발주자”와 사전 협의 후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.
- ② 게이트 스티커 광고물은 게이트의 정상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게첩(부착)하여야 한다.
- ③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기간 중 광고매체가 일시적으로 폐첩될 경우 또는 계약종료 광고시설물을 철거할 때 잔유물(접착제 등)을 제거하여야 한다.

광고시설물 세부내역(1)

1. 광고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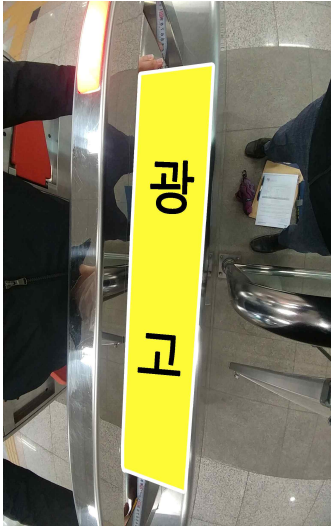


광고대상

역구내 게이트 광고(스티커) 139식(21개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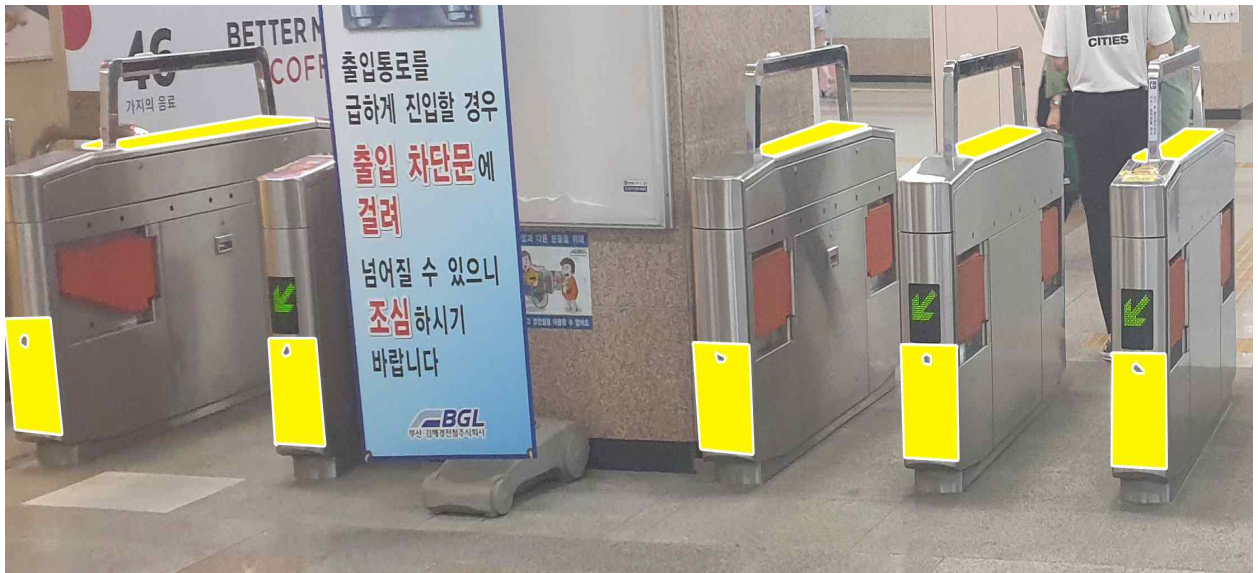
1-1. 역구내 게이트 광고(스티커)

역사	게이트 수량	게이트당 광고면 수 : 상단1, 하단2(양면)	총 광고면 수	규격 (단위 : cm)
사상	8	3	24	상단 20 x 85 하단 20 x 35
패법	7	3	21	
서부산	6	3	18	
공항	7	3	21	
덕두	6	3	18	
등구	6	3	18	
대저	7	3	21	
평강	6	3	18	
대사	6	3	18	
불암	6	3	18	
지내	7	3	21	
김해대학	7	3	21	
인제대	7	3	21	
김해시청	6	3	18	
부원	7	3	21	
봉황	6	3	18	
수로왕릉	7	3	21	
박물관	7	3	21	
연지공원	7	3	21	
장신대	7	3	21	
가야대	6	3	18	
합계	139	3	417	

1-1-1. 게이트 광고(스티커) 위치 및 규격

상 단	하단	
	승차	하차
		
20cm x 85cm	20cm x 35cm *열쇠구멍 별도 절취	

전체 예상도



광고시설물 세부내역(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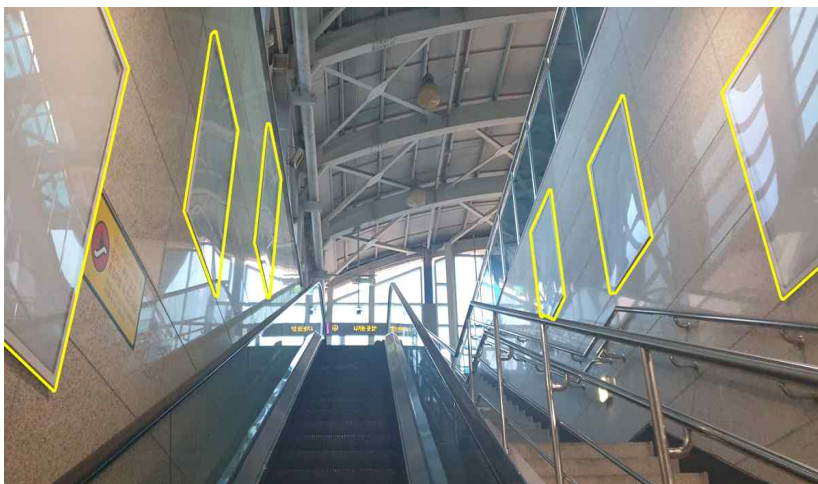
1. 광고대상

광고대상
역구내 E/S 벽면 포스터 57식(3개역)

1-1. E/S 벽면 포스터 광고(3개역)

역사	수량	규격(개당)
사상	2	240cm x 60cm
사상	35	130cm x 80cm
공항	12	
대저	8	
합계	57	

사진(예시)



ES 벽면 포스터 부착 전경



벽면 포스터 틀